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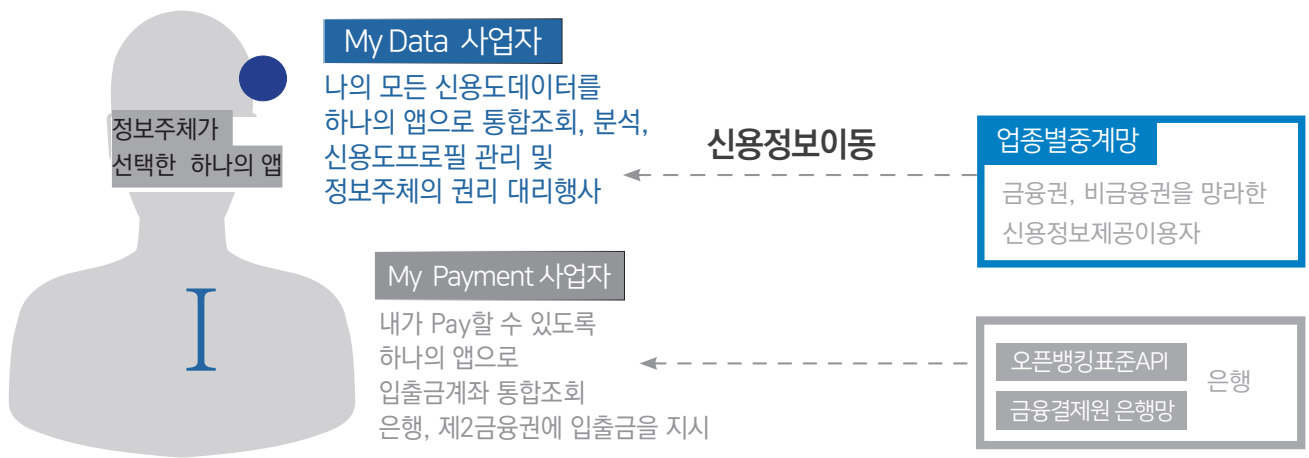
데이터3법. 핵심은 보호와 활용의 균형



신 정보법
2020년 8월 시행

신용정보이동권으로 New Player 등장 ①

마이데이터 사업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My Data 사업자 vs My Payment 사업자]

구분	My Data 사업자	My Payment 사업자
사업허가	금융위로부터 마이데이터사업자 허가 취득 (2020년 8월 신청예정)	금융위로부터 사업자금결제개시서비스 사업자 허가취득 (2020년 하반기 예정)
적용법	(신용정보통합이므로) 신용정보법 적용	(온라인입출금거래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사용망	미정(금융결제원 은행공동망 사용가능성 있음)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들이 업종별로 중계기관을 두고 중계망을 구축할 가능성 있음)	금융결제원 은행공동망 사용
사업의 경쟁력	정보주체의 모든 신용, 재산정보를 통합분석하여 개인에게 맞춘 금융컨설팅 가능	기존에는 은행각각과 펌뱅킹 (사업자와 은행간의 온라인뱅킹)계약을 해야 했음. 이제는 은행각각과의 계약없이도 은행계좌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가능
조회정보	모든 신용정보 (입출금계좌+공공요금+증권+보험+SNS.+보유부동산시세+대출...)	입출금계좌 관련정보만 조회 + 입출금 등의 실제 거래 가능
정보주체의 혜택	하나의 앱으로 모든 신용정보조회, 분석 종합적인 자금관리 및 신용도관리가능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 계좌현황을 한곳에서 집중관리. 타행간 거래수수료 하락, 간편송금

신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역할

1. 정보주체 대상 역할

신용도프로파일 관리 등
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관리

전송 받은 신용정보내역기록을 연 1회 이상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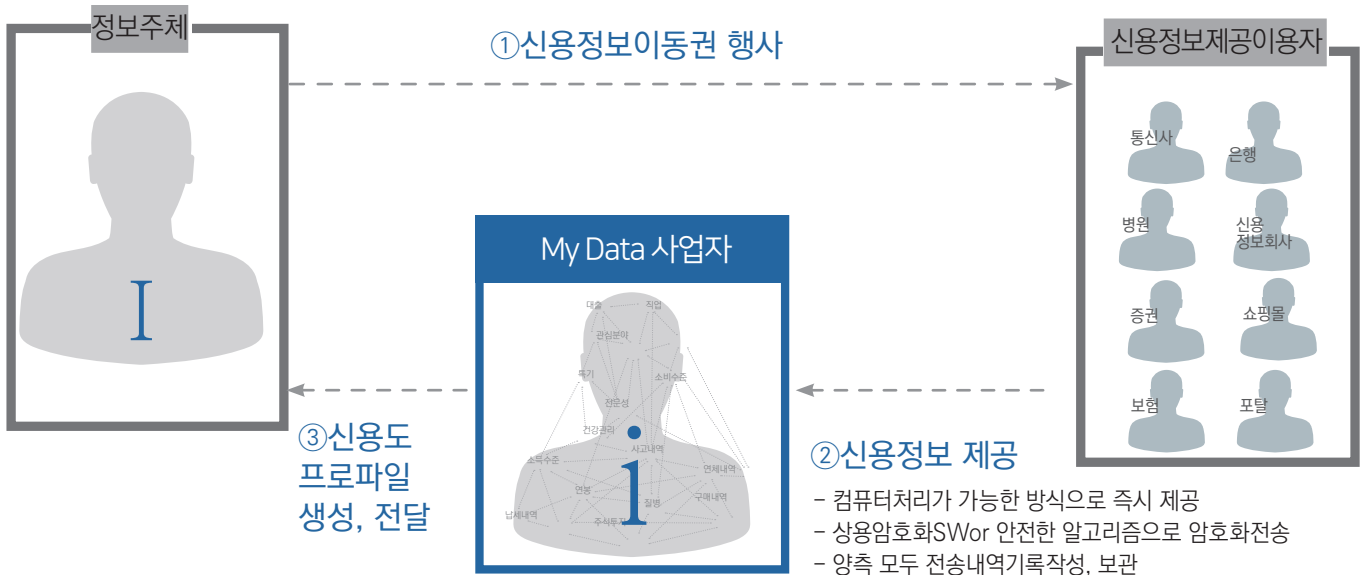
데이터분석, 컨설팅 업무

개인신용정보 관리계좌제공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대상 역할

정보대리인으로서
정보주체의 다음 권한을 대리행사

1. 신용정보이동권
2. 상거래 거절이나 중지시 근거정보 고지요구권
3. 프로파일링 관련 권한
 - (신용정보회사등이 산출한 신용프로파일링)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권, 이의제기권.
 - 프로파일링결과 개선을 위한 정보제출권한
4. 동의 철회, 연락중지 청구권
5.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
6. 개인정보조회 발생시 통지 요청권
7. 연1회의 개인신용평점 무료열람권
8. 정보주체에 대한 채권자변동내역정보 교부, 열람권



1. 내부관리규정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 (신용정보업규정 제23조의3 2항)

내부 관리 규정 포함 사항	1. 기록 보관	개인신용정보 수집·처리의 기록과 보관에 관한 사항
	2. 관리체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등 개인신용정보관리체계의 구성 및 운영절차
	3. 이해상충방지	금융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금융상품 추천·권유 알고리즘 운영 및 점검포함
	4. 분석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편향·왜곡하여 분석하는 것 방지
	5. 임직원 임무수행절차	가. 임직원의 내부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나. 불공정행위, 금지 및 제한 사항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6. 관리계획 및 교육계획	6. 개인신용정보 관리계획 및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자허가를 받기 위한 정보처리, 정보통신설비 조건

규정	세부요건	기술적 보호조치
시스템 구성	1. 가. DB서버, 통신서버, 웹서버, 보안서버 등 서버 시스템	
	나. 저장장치, 단말기 등 기타 주변장치	
	다. 해당업무 영위를 위한 각종 S/W 프로그램	
	2. 백업 및 복구시스템	
3. 내외부 네트워킹 등 통신시스템		
보안 체계	1.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프로그램,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탐지 및 백신프로그램	[DLP 시스템] Privacy-i
	2.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 시 보호대책	
	3. 직무분리 기준 수립	
	4.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5. 비상계획, 재해복구 훈련 실시체계	
	6. 서버, 단말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방안	
	7.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에 대한 출입통제절차	
	8. 주요 데이터에 대한 접속기록 유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솔루션 [DB] DB-i [WAS] WAS-i [SAP] App-i
	9.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가능한 컴퓨터에 대한 물리적, 논리적 망분리	
	10. 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논리적 망분리 (내부네트워크와 신용조회네트워크를 분리 운영)	
	11. 안전한 물리적 보안설비 (통신회선 이중화, CCTV 등)	
	12. 안전한 백업대책	
	13. 안전한 데이터 암호화 처리방침 및 암호처리 시스템 구축	[PC, USB내 정보암호화_DLP 시스템] Privacy-i
	14. 외부에서 정보처리시스템 접속시 안전한 접속 및 인증수단(VPN 등)을 적용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솔루션 [DB] DB-i

법규정 보기 _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업무

규정	내용
부수 업무	법 11조의 2 11조의 2 ⑥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그 본인에게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2.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는 업무 3. 제39조의3제1항 각 호의 권리를 대리 행사하는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령 11조의2 ④ 법 제11조의2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무와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3. 본인신용정보관리업무와 관련된 연구·조사 용역 및 상담업무 4.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업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신용정보업 규정 제13조의4 ③ 영 제11조의2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2.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광고 3.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제공하는 업무

법규정 보기 _ 마이데이터사업자가 대리행사할 수 있는 권한 1/2

규정	내용
법 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① 신용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권리행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법 제33조의2에 따른 신용정보이동권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4. 개인신용평가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 36조에 따른 상거래거절시 근거정보의 고지 요구권	법 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법36조의2에 따른 프로파일링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이의제기권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가. 개인신용평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내용의 결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한정한다) 다. 그 밖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화평가의 결과 나.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다.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초정보"라 한다)의 개요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2.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나.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가. 개인신용평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내용의 결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한정한다) 다. 그 밖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화평가의 결과 나.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다.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초정보"라 한다)의 개요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규정 보기 _ 마이데이터사업자가 대리행사할 수 있는 권한 2/2

규정	내용
<p>법 37조에 따른 동의철회권, 연락중지 청구권</p>	<p>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p> <p>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을 어려워지거나 제3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p> <p>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p>
<p>법 38조에 따른 열람 및 정정청구권</p>	<p>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p> <p>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법 38조의2에 따른 통지 요청권</p>	<p>제38조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p> <p>①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명의도용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조회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정보제공 중지 및 통지 방법, 통지에 따른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법 39조에 따른 무료열람권</p>	<p>제39조(무료 열람권)</p> <p>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신용평가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신용평점 2. 개인신용평점의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p>법 39조의2에 따른 교부 또는 열람권</p>	<p>제39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p> <p>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p>

법규정 보기 _ 마이데이터사업자의 행위규칙

규정	내용
<p>영 18조의 6</p>	<p>제18조의6(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p> <p>① 법 제22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 대하여만 전송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유도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하는 방법보다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는 방법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법 제39조의3 제1항의 권리에 대한 대리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4.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의 변경 및 철회의 방법을 최초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 5.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철회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 위약금 등 금전적,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6.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 7.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는 행위 8.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는 행위 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이 보유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삭제 방법을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 10.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송요구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들에게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한 범위 이상의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11.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p>신용정보업 규정 23조의 3</p>	<p>제23조의3(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p> <p>① 영 제18조의6제1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신용정보주체를 대리하여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 제5호, 제7호, 제8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한 개인신용정보 및 그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열람한 후에 개인신용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저장·동의하는 행위 3. 개인식별정보 등을 신용정보주체 동의없이 유·무선 마케팅등에 활용하거나 제3의 기관에 제공하는 행위 4.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송요구를 즉시 철회하지 않는 행위 5.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를 이유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들의 전산 설비에 과도하게 접근하여 부하를 일으키는 행위 6.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송요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행위 <p>② 영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내부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신용정보 수집·처리의 기록과 보관에 관한 사항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등 적절한 개인신용정보 관리체계의 구성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 3.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행위 발생 방지에 관한 사항 (금융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금융상품 추천·권유 알고리즘 운영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편향·왜곡하여 분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사항 5.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임직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임직원의 내부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나. 불공정행위, 금지 및 제한 사항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6. 개인신용정보 관리계획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소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220 knk디지털타워 9층

Tel: 02 2636 8300 | Fax: 02 2636 8181 | Email: privacy@somansa.com

copyright (c)1997-2020 SOMANSA ALL RIGHTS RESERVED.